

11-1320082-000013-09

ISSN 1738-2963



2016 제2호
치안정책연구

The Journal of Police Policies

2016. 9 (제30권 제2호)

치안정책연구소
POLICE SCIENCE INSTITUTE

경비업법상 민간경비교육내 무도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Need for Martial Arts Education as a Part of Education for Private Security Guards under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이 영 우* · 송 수 복**

차 례

- | | |
|---------------------------|------------------------|
| I. 서 론 | IV. 실질적인 무도교육을 위한 개선방안 |
| II. 민간경비상 무도 | V. 결 론 |
| III. 현 민간경비교육 내 무도교육의 문제점 | |

국 문 요 약

경비활동은 국가의 고권적 사항이나 여러 한 계로 인하여 민간에게 위탁한 만큼 국가는 이에 대한 여러 입법활동을 통하여 민간경비를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경비업무에 대한 관리감독과 함께 국가는 민간경비업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이에 대한 입법개선활동을 하여야 한다. 이 중 민간경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민간경비원에 대한 경비교육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사안으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경비교육 중 무도 관련 교육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해주는 경비업무를 수행하며 경비대상에 대한 위해자의 행위로부터 가장 신

속하며 효율적인 방법으로 위해자를 제압하여 야 하는 민간경비원에게 있어 가장 필수적이며 중요한 교육이다. 이러한 민간경비원이 무도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의 무도수련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위기상황별 대비훈련이 지속·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경비업법상 민간경비교육의 문제점들과 함께 무도교육 관련 규정은 상당히 미비한 실정이다. 공경비와 달리 경비업법상 민간경비는 경비업무 수행에 있어 권력적 작용이 입법규정상 상당히 제한되어 있어 효율적인 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비원의 무도능력은 업무 수행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

* 광주여자대학교 경찰법학과 교수(제1저자)

** 충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교신저자)

하고 있으나, 현재 입법규정상 민간경비원이 실질적인 무도능력을 갖추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비업법 내에 체계화된 무도교육내용과 지속적으로 실질적인 무도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한 관련 규정의 마련이 필요하다.

◆ 주제어 : 기본권, 경호경비, 경비교육, 무도, 무도교육, 수련, 민간경비, 공경비, 신입교육, 민간경비교육

I. 서론

경비업법상 민간경비원은 국가의 전권적 사항인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민간경비원에게 무도능력은 필수불가결한 존재이다. 이러한 치안담당 업무는 국가의 치안병력 한계에 따른 민간위탁형식으로 이에 대한 올바른 입법 및 관련 규정은 매우 중요하다.

현대사회의 여러 변화들 속에서도 무도는 무도의 본질적인 의미와 무도교육이 필수요소로 작용하는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영역에서는 무도의 외형적인 요소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하며, 기술적 요인이 타인의 권리를 불법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무도능력 발휘에 대한 올바른 무도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올바른 무도교육을 통하여 무도수련자는 올바른 인격이 형성되며 무도수련의 궁극적인 목적인 자아실현, 그리고 최종적으로 올바른 무도의 의미를 실현하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불법행위가 방지되어야 한다.

현재 무도교육이 제도화되어져 있는 영역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경비활동을 주된 업무로 하는 분야이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경비활동을 하는 경찰과 군인은 신입교육기간과 재직기간 중 관련 법령에 의해 무도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이러한 공경비와 상반되는 사경비, 즉 민간경비는 경비업법에 의해 신입경비교육과정에서 무도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공경비와 민간경비는 모두 경비활동을 그 업무로 한다

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공경비는 관련 법률에 의하여 권력적 작용이 인정되나 이에 반해 사경비 활동을 하는 민간경비는 경비활동에 있어서 비권력적 작용만이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비권력적 작용 내에는 경비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정된 무기와 장비만이 사용될 수 있으며, 경비활동 대부분이 무도와 관련된 부분이다.

민간경비는 고도의 경제성장과 급변화한 사회환경 요인들로 인하여 국민의 안전에 대한 의식이 상당히 증대됨으로 인해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국민의 사회안전유지에 대한 많은 요구에 대하여 국가의 직접적인 치안유지활동¹⁾으로는 한계²⁾가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한계로 인해 민간경비는 지속적으로 발전해오고 있다. 국민의 안전은 국가가 부담하는 고유의무이나 여러 한계들로 인하여 그 업무를 민간분야에 위탁하게 된 것으로, 이와 관련된 민간경비 분야에 있어서 체계화된 입법규정이 필요하나, 민간경비영역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상 무도교육에 관한 규정이 전무하거나 미비한 실정이다.

- 1) 국가의 국민에 대한 치안유지 및 권리보호 규정은 우리나라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 제16,17조(사생활보호), 제30조(범죄피해자구조권), 제23조(재산권 보호)에서 비롯되며, 이러한 국민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실현하는 국가작용은 대부분 행정작용을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대표적 행정기관인 국가경찰은 「경찰법」에서도 담당업무규정을 두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국민에 대한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권리 보호는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 2) 현재 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경찰1인당 치안 담당인구는 456명으로 가까운 치안선진국 일본보다 약 130명 가량 많은 국민을 담당하고 있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치안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 의해 특정 치안활동을 민간에게 위탁한 만큼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경찰과 같음할만한 무도능력 및 사명의식을 갖추어야 한다(www.police.go.kr: 2016. 7. 21 검색).

본 연구는 현재 경비업법상 경비교육내 실질적인 무도교육 관련 규정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들을 제시하였다. 경호학 및 행정학적 측면과 교육훈련과 같은 민간경비제도적 측면에 관한 연구보다는 무도의 본질적 측면과 입법규정의 개선방안에 중점을 두어 연구하였다.

II. 민간경비상 무도

1. 민간경비의 역할

현재 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경찰 1인당 치안 담당인구는 456명³⁾으로 가까운 선진국 일본보다 130명 가량 많은 국민을 담당하고 있어 치안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력 현황은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치안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치안인력부족의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가 이에 대한 입법규정을 마련하여 민간경비 영역은 치안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치안수요자와 치안서비스 공급자 간의 합의 및 계약에 의하여 효율적인 경비서비스를 적시적소에 제공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장점들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민간경비 영역은 성장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국민에 대한 경비업무는 과거 전적으로 국가가 담당하였으나, 치안인

3) 2000년대에 들어와 2002년 527명으로 시작하여 2015년까지 경찰 1인당 치안 담당인구가 점차 감소하였다. 특히 정부정책으로 인하여 신입순경채용인원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경찰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며, 또한 직접적인 치안업무를 담당하는 현장 경찰인력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행정사무 및 전문분야 경찰들의 인력증가 부분도 존재하여 여전히 경찰 1인당 치안 담당인구가 많은 상태이다.

력의 부재 및 여러 한계점들로 인하여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 증가하는 치안수요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여 국가 또한 공경비에 의한 경비활동이 미치지 못하는 분야에 민간경비로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공경비가 담당하여야 할 업무에 대하여 민간경비로 대체되고 있는 이유는 공경비의 공급인력이 점차 증대되는 안전과 관련된 경비수요를 모두 충족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범죄의 유형 또한 점차 다양화, 조직화, 광역화, 저연령화 등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으나, 치안업무에 관한 공경비를 담당하는 경찰기관은 인력 및 예산의 부족, 낮은 보수체계, 과중한 업무시간과 업무량, 경찰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 등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⁴⁾ 또한 공경비의 경비활동은 그 성질상 평등성, 확실성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개개인의 필요한 시기 및 장소에 경비활동이 이루어질 수 없어 대부분의 경비활동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민간경비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현 추세이다.

2. 민간경비와 무도

최근 발생하는 범죄들은 그 모습이 복잡·다양화되어가고 있으며, 위해수법 또한 지능화, 신속화, 흉폭화 되어 가는 범죄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발생건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많은 사회구성원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⁵⁾ 현장에서 이러한 범죄에 대한 초기대응과 예방활동은 주로 민간경비원의 경비활동에 의해 이루어지며,

4) 송수복, “경비업법 개정을 위한 시론: 직무와 관리권한을 중심으로”, 청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2-3쪽.

5) 박준석·정성수, “경호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10호, 한국경호경비학회, 2005, 128쪽.

현장에서 민간경비원은 경비대상에 대상 위해자를 신속히 제압함으로써 경비대상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경비업법상 민간경비활동은 최종적으로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경비원에 의해 완성된다. 이것은 위해자의 무력행위 및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 및 방위활동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경비원에 무도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무도능력은 경비업체의 경비원 선발과정에서 검증될 수 있고, 채용 후 지속적인 직무교육내 무도교육을 통하여 갖추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민간경비원의 무도교육의 필요성은 단순히 업무적 측면에서만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최근 경찰활동을 보완하는 민간경비원 또한 여러 위협에 노출되어 있어 경비원 본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민간경비활동 중 무도능력 필수적 요건으로 인정되고 있다.⁶⁾

3. 민간경비교육내 무도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이론적 근거

1)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 실현

국민에 대한 기본권 보장의무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존립목적이다. 국가는 타인 및 여러 위해요소로부터 국민의 생명, 재산, 자유 등의 기본권을 보장 및 보호해주어야 하며,⁷⁾ 이를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인 국가경

6) 국가경찰은 경찰권 발동근거 규정과 경찰작용법상의 비례의 원칙의 의해 경찰권 발동에 있어 제한을 받는다. 이로 인하여 경찰은 소극적 질서유지를 바탕으로 업무 수행 중 총기·진압장구 등의 많은 장비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위협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경찰작용에 있어 보조자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경비원에게는 경찰의 권한보다 상당히 축소된 단순한 사인적 신분만이 인정되어 경비의뢰자의 안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되고 업무수행에 있어서도 상당한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찰제도를 마련하여 그 의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치안인력의 부족, 예산 부족, 전문화 부재 등으로 인하여 공경비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보호는 그 한계를 나타내게 되었으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가가 마련한 제도가 바로 민간경비이다. 이러한 국가의 국민에 대한 기본권보장의무는 공경비에 의해서는 한계가 나타나 민간영역에 위탁한 만큼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민간영역에 위탁하였다 할지라도 민간경비가 공경비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제도적 장치 마련은 필수적이다.

민간경비 영역은 과거 개인의 신변에 대한 안전을 주된 업무로 하여 경비보다는 경호의 개념에 가까웠다. 그러나 현대사회에 들어와 급격한 경제발전과 대규모 재산가의 등장, 기술의 최첨단화를 통한 부가가치가 높은 정보 및 자산들의 등장으로 국민 개개인 또는 기업의 자산에 대한 안전 확보 요구가 증대되면서 시설경비가 급격하게 발전하게 되었다. 이후 인력경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계가 인력을 대신하기에 이르러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자 하는 욕구가 증대되고 있다. 우리 「헌법」 제 23조에서도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명문상 규정을 두어 보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재산권보장의무는 국가경찰에 의하여 이행되고 있다. 그러나 여러 치안상의 한계가 발생하여 이러한 재산권보호 또한 민간영역에 위탁되어진 만큼 이러한 의무이행확보를 위하여 철저한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대부분의 개인의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경비업무는 인력경비에서 기계경비로 대체되고 있으나, 즉각적인 상황대처, 우발상황시에 대한 위기관리능력 등의 이유로 인력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도 적지 않

7)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1, 396쪽.

다. 대규모 재산 또는 국가중요시설과 같은 위해 발생시 그 여파가 다소 클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 경비장비는 그 사용에 제한되어 경비인력의 역할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 경우 경비의뢰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경비원에게는 경비대상시설의 침입자로 하여금 접근이 용이하지 않게 예방적 경비활동과 더불어 현장에서 침입자를 효율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무도능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무도능력이 갖추지 않은 경비원에 의한 경비활동은 각종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발생하며, 이는 곧 국가에 의한 경비활동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발생된 문제점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국가의 존립이유에 위배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국민에 대한 기본권보장 및 보호의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간경비제도에 체계화된 무도교육과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규정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2) 민간경비원 법적지위의 한계 극복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보호의무는 전적으로 국가의 의무이며 이것이 곧 국가의 존립목적이다. 그러나 국가는 여러 치안상의 한계와 복잡하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치안환경들을 모두 고려하여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 또한, 범죄현장 및 자신의 권리에 대한 위해를 가져오는 현장에서 공경비에 의한 구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이유에 의해 국가경찰은 각종 치안에 대한 사전적 활동과 사후적 활동을 모두 수행하지만 사후적 측면이 좀 더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이다.

따라서 이러한 공경비에 의한 국민의 권리를 즉각적으로 보호해주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민간경비제도가 탄생하게 되었고, 국가

가 이를 법제도화 시킨 것이다. 이 경우 국민 스스로의 자구행위와 민간 경비원에게는 상당한 대처능력이 필요하며 가장 효율적인 대처능력은 자신 또는 경비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무도능력이다.

(1) 민간경비원의 현행법 체포

민간경비원은 자신의 경비업무 범위 내에서 경비대상에 대하여 위해를 가하거나 장소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지만 위해 발생 가능성이 많은 자를 현장에서 제지하여 경비의뢰자로 하여금 위탁받은 경비업무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11조⁸⁾에 해당되는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은 이법 제212조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에 의하여 사인 신분일지라도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 체포 후 사인은 사후적 경찰활동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즉시 국가경찰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법규정은 공공질서와 사회 안전에 대한 권력적 경찰활동에 대한 전권한성을 가진 국가가 그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민간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이러한 국가의 안전유지 의무를 국가가 모두 이행하지 못하여 민간영역에 그 의무를 위탁한 경우 완벽한 의무이행을 위하여 권한을 위임한 분야에 대한 입법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경비의뢰인 또는 경비대상의 안전 확보를 그 업무로 하는 민간경비원

8) 「형사소송법」 제211조에 해당되는 자란 ①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 ②범인으로 호칭되어 추적되고 있는 자, ③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자, ④신체 도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거가 있는 자, ⑤누구임을 물음에 도주하려는 자를 말한다. 민간경비원은 자신의 업무범위 내에 이러한 자가 존재할 시에는 본인의 경비의뢰인 또는 경비대상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법 제212조에 의해 체포할 수 있으며, 국가경찰에게 인도하기 전까지 감금할 수 있다.

은 이러한 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위기상황 및 우발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 이상의 무도능력이 요구된다. 경호무도는 다양하게 전개되는 경호상황에서 우발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그 상황에 적절한 기법을 적용하여 경호대상자를 안전하게 보호가 위해 사용되는 무도⁹⁾를 말하는데, 보통 이러한 경호무도에서는 유도 및 합기도를 이용한 체포술 및 유도의 여러 제압기술이 활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신속한 상황판단이 쉽지 않은 우발상황에 있어서 능숙하게 무도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련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현 경비업법상 경비원에 대한 무도교육 관련 규정으로는 해당 경비원이 이러한 무도능력을 갖추기에 부족하며, 경비업법의 입법목적과 국가의 국민에 대한 의무이행확보를 위하여 체계적이며 실질적인 무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개정 작업이 필요하다.

(2) 형법상 정당방위 및 자구행위

우리나라는 국민에게 그 의사에 기초한 자력구제를 금지하고, 긴급피난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실력의 발동을 금지하는 한편, 국가 및 그 사법, 행정조직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통치구조로 되어 있으며, 이러한 국가의 형태에 의해 우리나라의 공권력은 국가독점원칙이 적용되어 있다. 따라서 사인에 의한 권력적 활동은 원칙적으로 배제된다.¹⁰⁾

그러나 국가는 예외적인 사항을 입법내용으로 하여 사인에게 제한적으로 권력적 작용을 인정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형법」 제21조(정당방

9) 이상철, “경호기법에 입각한 경호무도 지도방법에 관한 고찰”, 용인대학교 무도연구지, 제8권 1호, 용인대학교, 1997, 215-235쪽.

10) 김홍규, “국내 특수경비원의 문제점과 그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15쪽.

위)와 제23조(자구행위)에 의하여 본인 또는 경비의뢰인 및 경비대상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와, 본인 또는 경비의뢰인 및 경비대상의 법익을 침해당한 경우 법적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각 조항의 내용에는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타인에 대한 권력적 행위에 대해서 전적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형법상 사인에게 권력적 행위에 대한 예외적인 권한부여는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권력적 국가작용의 한계를 극복하고 근본적으로 국민의 권리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지향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경비업법상 민간경비원 중 특히 신변보호를 업무로 하는 경호원은 경비대상자의 신변에 위해를 가하는 자에 대하여 그 위해를 방지하여야 하며, 위해 발생시에는 적절한 대응조치로 더 이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호원에게는 이를 저지할 무도능력이 수반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정당한 방위행위가 가능하며 사안에 따라 법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의 자구행위까지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정당한 타인의 권리 침해를 통하여 보호대상의 신변확보와 안전을 유지할 있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전적으로 국가의 권력적 작용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 국가의 의무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러 치안상의 한계로 인하여 민간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 만큼 의무이행의 확보를 위하여 위임시에는 적절한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서 국가는 국가작용을 함에 있어서 책임행정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법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민간경비원은 그 업무를 충실히 이행

할 수 있을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권리보호의무를 민간에게 위임하였다 할지라도 충분히 이행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민간경비원에게 무도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명확한 정당방위의 범위와 자구행위의 범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민간경비 영역은 그 업무 수행에 있어서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국가경찰의 경우도 정당한 법집행에 있어서 필요이상의 권력작용으로 인하여 국민에게 범익침해를 가져올 시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공공질서와 안녕유지를 위하여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필요최소한의 경우만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그 근본적인 내용은 침해하지 못한다고 하여 기본권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헌법을 바탕으로 행정법상에서도 비례의 원칙에 의한 과잉조치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는 곧 정당한 권한을 지닌 국가경찰이라 할지라도 그 정당성의 범위는 한정되어져 있으며, 정당한 법집행시에도 범익의 균형성을 바탕으로 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과 침해되는 이익을 비교형량할 때 보호되는 이익이 더 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조차도 이렇듯 국민의 기본권을 가장 존중하고 최소로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¹¹⁾ 정당한 법집행 권한이 없는 민간경비원의 필요이상의 행위는 과잉방위로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하는 것이다. 즉, 민간경비원에게는 실질적인 무도능력과 더불어 명확한 업무범위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비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현 실정

11) 김종보, “기본권침해 심사기준에 대한 소고:과잉금지원칙의 적용영역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제10권 제3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09, 176-177쪽.

에서 만약 민간경비원이 정확한 법적인 견해와 무도능력¹²⁾ 발휘의 범위에 대한 인지가 없으므로 인하여 그 범위를 넘어서는 직무를 수행한 경우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것이 두려워 직무를 태만할 수도 있는 것이다.¹³⁾ 따라서 많은 액수의 피해보상금 또는 오히려 가해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 경비업무를 소홀히 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관련된 적절한 법률내용의 숙지와 적절한 무도능력을 기르기 위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Ⅲ. 현 민간경비교육 내 무도교육의 문제점

현재 경비업법상 민간경비교육 내 무도교육은 본질상 같은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타 경비제도 내의 교육과 비교하였을 경우 교육시간상의 문제, 내용상의 문제, 교육기관상의 문제 등 여러 문제점을 갖고 있다. 현재 경비업법상 민간경비교육 내 무도교육이 존재하나 실질적인 무도교육시스템의 도입 및 여러 문제점에 대한 개선 등 민간경비의 도입목적에 부합될 수 있는 무도교육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절실하다.

12) 일반적으로 경호무도에 주로 사용되는 유도와 합기도는 상대방에게 타격위주로 위해를 가하기 보다는 더 이상의 움직임을 취할 없도록 하는 매치기, 꺾기, 누르기, 비틀기, 조르기 등으로 상대방의 힘과 움직임을 제압하는 무도이다. 이러한 무도의 기술적 요인들은 단기간에 걸쳐 습득하여 우발상황시 적용할 수 없으며, 상당한 반복과 다양한 상황에서의 수련을 통하여 습득될 수 있는 것으로 지속적인 수련과 체계화된 교육시스템이 수반되어야 한다(서인덕, “우발상황시 근접경호의 합기도기술 적용 방안”, 용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22-23쪽).

13) 김용운, “민간경비 자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104쪽.

1. 법률상의 한계

1) 경비업법상 체계화된 무도교육 규정의 부재

경비업법 제13조에서 경비업자는 경비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입교육과 직무교육을 받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간경비활동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경비원의 경비교육에 관한 사항을 위임입법화 하고 있으며, 하위법령인 경비업법시행령 제18조에서는 이러한 경비원에 대한 신입경비교육기관 및 교육대상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그 교육과 관련된 사항은 경비업법시행규칙으로 재위임입법화 하였다.

이와 같이 민간경비제도에 있어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경비원의 교육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하위 법령에 재위임입법화 하고 있는 것은 자칫 책임회피행정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공경비의 대표적 기관인 국가경찰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와 범죄자의 체포 및 수사, 공공의 질서유지 등 주로 공익을 위해 경비활동을 하며, 이에 반해 민간경비는 특정 경비의뢰인의 사익을 위해서 경비활동을 한다. 이 경우 경찰은 경찰법상 모든 경찰업무에 있어 사안에 따라 권력적 작용이 대부분 인정되나, 민간경비원은 사인과 동일한 법적지위에 있어 극히 제한된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와 경비대상의 관리권 범위 내에서만 권력적 경비활동이 가능하다. 이처럼 민간경비원에게는 타인에 대하여 강제권이 전무하거나 극히 제한된 경우 경비대상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전 경비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민간경비에서 가장 중요한 경비원의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두 번에 걸쳐 하위법령에 위임입법화한 것은 행정법상 책임행정의 원칙에 부합되지 못할 것이며, 최종적으로 경비업법의 입법목적에 또

한 부합되지 못할 것이다.

민간경비원에 대한 교육 중 신입교육의 경우 무도와 관련된 교육과목인 호신·체포술이 경비업법상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업무의 5가지 업무로 구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경비원에게 획일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그 교육시간 또한 일반경비원의 경우 3시간, 특수경비원의 경우 5시간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무도능력 발휘가 가능할지 의문이 든다. 또한 경비지도사에 대한 총 44시간 가운데 무도교육은 3시간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경비원에 대한 교육의 실효성이 문제시 될 수 있다. 일반경비원은 총 교육시간 24시간 중 약 12.5%, 특수경비원은 88시간 중 약 5.7%, 경비지도사는 총 44시간 중 약 6.8%로 이는 현실적으로 실무보다 이론 중심의 형식화된 교육구조라 평가될 수 있다. 대부분의 권력적 작용에 관한 권한이 존재하는 경찰은 신입교육과정 중 최소 98시간에서 최대 약 480시간에 걸쳐 무도교육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범집행권한이 전무한 민간경비원에 대한 무도교육은 신입교육기간 중 단 한차례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

민간경비원의 무도능력은 지속적인 무도교육과 경비현장에서의 반복적 실습을 통하여 갖추어질 수 있으나, 현 경비업법상 경비원에 대한 무도교육규정은 이와 같은 문제들로 인하여 그 실효성에 있어 문제시 된다.

2) 민간경비원의 선발규정상 무도능력

현행 경비업법에서 호송경비업무와 신변보호업무의 허가기준에는 경비인력 중 무술유단자 5인 이상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신변과 재산에 관여된 업무에 대해서는 무술유단자를 경호업종에 5인 이

상 종사하도록 할 만큼 경호직 종사자에 대한 무도교육은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민간경비산업 현장에서는 무도능력이 반드시 전제가되는 분야의 경비원 채용시 경비업체에서의 선호하는 외모, 근속성, 보수의 적정성, 업무경험 등의 형식적인 요건만을 중요시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무도와 관련해서는 무도단증의 보유에 따라 채용에 있어서 약간의 우대효과로 작용할 뿐, 이에 대한 무도능력의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검증이 가능한 전문인력 또한 경비업체 내에 존재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무도능력이 필수요건으로 되는 경비업무 분야에 있어서 무도유단자를 경비원 요건으로 하는 경비업법 규정은 존재하나, 이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과 무도능력의 검증방법에 대해서는 전무한 실정이며, 채용 후 지속적인 수련과 무도능력의 검증과 관련된 체계적인 교육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 또한 경비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담당하는 경비지도사 또한 선발시험시 무도와 관련된 과목은 존재하지 않으며, 경비지도사에 대한 무도교육규정 또한 미비한 실정이다.

여러 선발과정에서의 형식적 요소를 중시하는 경비업체 또한 실질적으로 경호업무와 관련해서는 사설경호원 양성학원에서 상대적으로 체계화된 교육을 이수한 수료생들을 선호하는 경비업체가 상당수이며, 전국 대학의 경호학과 관련 학과 졸업생과 체육전공자들이 경비업체에 취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설경호학원의 민간경호원자격증 취득과정은 약 3~12주 동안 실시하여 무도 초단증 취득을 위한 기간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경호원이 갖추어야 할 무도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수 없으며, 경호학과 관련 학과 졸업생¹⁴⁾들 또한 오랜 기간 동안 체계적인

14) 4년 과정 대학의 경호경비 관련 학과 기준으로 통상 1학기 약 3~5시간 정도

무도교육을 이수했다고 판단하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

2. 무도교육 내용상의 한계

1) 무도의 본질적 의미 배제

무도는 무(武)의 수련을 통하여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규범 및 인간윤리의 도덕으로서 인간 삶의 지표가 되는 도(道)의 함양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도(道)에는 우리나라의 정서상 유교의 인, 의, 예를 의미하는 것으로 1인 사회가 될 수 없는 현실에서 심신의 수련으로 정신적 수련을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무도는 그 나라의 역사·사상·지역·사회 등의 환경에 따라 그 나라만의 신체관 및 신체사상을 지니고 있으며, 과거 외부의 적으로부터의 경비활동을 위한 무도가 아닌 현대무도는 자기수련을 통하여 자아를 완성하고 이를 통하여 인격의 발전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¹⁵⁾

이와 같이 무도를 수련한다는 것은 강인한 신체를 목표로 하는 것보다는 올바른 인격을 형성 및 완성하는 것으로 정신적 작용이 결여된 무도수련은 단순한 외형적인 발전에 불과한 것이다.¹⁶⁾

우리나라의 현대 무도는 일반적으로 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주변에 적지 않게 도장들이 운영되고 있다. 이중 태권도와 합기도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유도와 검

의 무도교과 수업이 이루어지며, 15주 수업을 기준으로 1년 간 약 90시간, 4년 간 약 360~600시간 정도의 무도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15) 민왕식·박준석·오세광, “무도수련과 경호원의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14호, 한국민간경비학회, 2009, 82쪽

16) 박준석, 한국무예학통론, 백산출판사, 2004, 68-71쪽.

도는 타 무도와는 달리 수련생들이 적은 실정이다. 이러한 무도 도장들은 열악한 시설과 환경 속에서 생계를 위한 도장 운영이 대부분이며,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치열한 경쟁 속에서 수련생을 유치하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와 흥미위주의 도장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도장에서는 전문 무도수련보다는 단순한 체력증진과 성과위주의 교육으로 무도 급수의 상승과 대회입상을 위해 기술적 요인만을 강조한 교육이 상당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무도가산점제도에 의해서 단순 서류상 무도능력 증명제도를 악이용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어 관련 단체 및 도장들이 비판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러한 무도교육 속에서 무도수련의 본질적 의미를 목표로 끊임없는 수련을 지속하는 도장 및 수련생들도 적지 않으나, 무도교육의 대상연령층이 어린이 및 청소년을 상대로 대부분 이루어지는 만큼 교육의 지속성을 여러 한계로 인하여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민간경비교육 내 무도교육은 우발상황시 경호대상에 대한 위협을 가하는 자를 신속하게 제압하여 경비대상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장 효율적인 무도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무도교육에 있어서 체포·호신술은 오랜 기간 동안 반복되고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에 의해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무도교육은 실용성을 바탕으로 둔 단순한 기술적 요인에 대한 수련을 통하여 경비업무의 완성을 그 목표로 하기 때문에 무도 본연의 의미와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무도교육의 목적은 약자를 보호하고 경비업무에 있어서는 경비대상의 보호이나, 정신적 수련이 미비된 자의 단순한 기술적 수련으로 교육의 목적을 과연 달성시킬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최근 민간경비원들에 의한 불법행위들이 무도 본연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으로 증명되고 있다.

2) 무도교육 전문인력 및 기관의 부재

현재 신입경비교육기관의 경비교육은 경비원에게 경비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필수과정이다. 경비원의 교육을 담당하는 경비교육인력은 교육강사로 인정될 수 있는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었으나, 그 실질적인 교육능력에 대한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경비교육기관의 교육강사는 교육기관과의 친분관계와 교육일정계획의 편의성, 그리고 교육수당을 고려한 강상의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¹⁷⁾

이와 같이 전문적인 교육을 담당하여야 하는 교육강사 선정 관련 규정 또한 미비한 현실에서 이러한 교육강사에 의한 무도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지는 의문이다. 신입경비교육과정에서 3~5시간 내에 무도교육을 종료하여야 하는 현 경비업법 규정은 실질적인 교육보다는 단발성의 실습 또는 이론교육으로 대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비원이 무도능력을 발휘할 경우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나 경비현장의 여러 변수로 인해 경비원의 경비활동이 공격적성향인 경우 오히려 경비대상의 안전확보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무도교육자의 교육으로 인하여 정신적 교육까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¹⁸⁾ 그러나 대부분 형식적인 무도교육으로 인하여 기술적 요인만을 습득하여 2차적 불법행위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17) 교육강사 기준과 관련하여 경비업법시행규칙에서 특수경비원 신입교육강사기준에 대해서만 규정해놓고 있을 뿐, 일반경비원에 대한 신입교육강사기준에 전무하다. 다만, 이와 관련된 경찰청 내 규정에서 일반경비원 신입교육강사기준을 마련하여 교육강사의 전문성에 대한 법규정은 미비하다.

18) 오세광·박준석, “경호무도 수련의 도덕교육 발전방안”,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23호, 한국경호경비학회, 2010, 83쪽.

또한 전문성이 인정되는 무도교육을 위해서는 전문교육인력과 더불어 무도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무도전용 교육장은 무도교육을 통하여 민간경비원이 실질적인 무도능력을 갖추기 위한 필수적 요소이다. 그러나 현재 소규모의 민간경호업체에서는 무도교육을 진행하기에는 여러 운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실질적인 무도수련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일부는 교육용 강당을 무도수련장과 겸용으로 사용하거나 심지어 정신교육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으며, 업체의 근거리에 있는 사설 무도체육관에 위탁교육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¹⁹⁾

경비원에 대한 올바른 무도교육은 경비대상의 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으로 2차적으로 경비원 본인의 안전과도 연결될 수 있으므로, 경비원에 대한 무도교육은 전문성이 입증되며, 실질적인 무도교육능력을 갖춘 교육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전문무도교육자와 더불어 실질적인 무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무도전문교육장이 필요하다.

3) 체계화된 교육프로그램의 부재

현행 경비업법에서 경비업무는 시설경비·호송경비·신변보호·기계경비·특수경비업무로 구분되어 있고, 일반경비와 특수경비로 분류되어 있다. 이와 같이 민간경비업무는 각각의 업무특성마다 분류되어 있으며, 이러한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민간경비원 또한 업무가 상이하고, 이에 따라 업무수행시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황과 위해요소가 달리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경비업법상 경비교육은 무도교육과 더불어 교육 전반에 걸쳐

19) 신윤호, “합기도 술기의 경호무도 적용”, 용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30쪽.

대부분 중복된 교육과목과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 각각의 경비업무마다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²⁰⁾ 경비교육은 신입교육과정에서 각각의 경비업무마다 세분화된 전문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현장배치 후 직무교육을 통하여 지속적인 교육으로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으나, 현재 획일화된 교육과정을 경비교육생들에게 적용시키는 것²¹⁾은 실질적인 경비교육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와 같은 체계화되지 않은 경비교육 중 민간경비원이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무도능력과 관련된 교육은 단 3~5시간에 불과한 것은 매우 형식적인 경비교육규정이라 평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장에서 경비대상의 안전은 확보되지 못할 것이다.

현재 일반경비원 신입교육과목 중 각 업무별 착용할 수 있는 경비장구들 또한 상이하여 이를 활용한 무도기술과 더불어 위기 상황별 무도능력의 구비가 이루어져야 민간경비원은 경비대상에 대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현재의 민간경비교육 내 무도교육은 이러한 경비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획일화된 체포·호신술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어 민간경비산업의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20) 현재 경비업법상 신입경비교육 관련 규정에서는 이론교육4시간(경비업법과 범죄예방론), 실무교육 19시간(경비업무, 체포·호실술, 장비사용법 등)으로 되어져 있으며, 실습교육은 실질적으로 몇 가지에 불과하다.

21) 일반경비원 신입교육의 경우 시설경비업무·호송경비업무·신변보호업무·기계경비업무 등에서 근무하는 교육생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교육은 시설경비원의 교육과목에 준하여 교육을 받고 있다. 이로써 일반경비원으로 분류된 경비원은 특성화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해당 경비원은 교육이 무료하고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생각으로 교육 참여에 있어 형식적으로 임할 것이고, 해당 경비업자는 직원을 위한 별도의 자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불편 또한 발생하여 현 경비업법상 민간경비교육의 비현실성이 문제시 되고 있다 (임재성, “민간경비원 교육훈련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51쪽).

4) 무도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의 부재

민간경비업무를 온전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도교육과 더불어 정신적인 교육과 희생정신, 사명감, 책임감 그리고 자기의 직업의식 또한 필요하다.²²⁾ 그러나 민간경비산업 현장에서는 경비원에 대한 윤리교육 보다는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 요인에 초점을 맞춘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지속적인 형식적 교육과 경비업체의 상업적 운영방식은 민간경비원들의 윤리성 확보에 대한 중요성을 점차 감소시키고 있는 것이다.

초창기 민간경비업체는 조직폭력배로 이루어진 용역업체들이 다수를 이루었으며, 조합시위 현장, 부동산 입찰현장, 노사대립현장 등에 투입되어 타인의 권리에 대한 적법한 침해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불법행위를 범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가장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았던 안산 자동차부품 공장에서 경비업체의 불법폭력행위(일명, ‘컨택터스 사건’)²³⁾는 민간경비원 그리고 민간경비산업에 전반에 걸쳐 윤리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사건이었다.

인근 무도체육관에 자녀들을 보내는 부모들은 자녀의 신체단련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예의범절과 함께 장차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자녀의 기본적 정신세계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무도를 수련함으로써 인하여 자연스레 갖추어지는 윤리성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자아의 완성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민간경비산업 종사자들의 윤리성 확보는 단 몇 시간에 불과한 이론교육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현재 경비업법상 경비교육내 윤리교육은 일반경비원이 ‘직업윤리 및 서비

22) 오세광·박준석, 앞의 글, 65쪽.

23) 김용운, 앞의 글, 3쪽.

스(예절 및 인권교육을 포함)'으로 3시간, 특수경비원은 '예절교육'으로 2시간에 불과하다(경비업법 시행규칙 [별표 2], [별표 4]).

이러한 단발성의 짧은 교육으로 윤리성 및 도덕성은 갖추어질 수 없는 것이며, 무도에서의 윤리의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도교육시간의 증대와 윤리교육을 겸비한 무도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며, 무도교육프로그램 내에 윤리 관련 교육과목을 독립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²⁴⁾

IV. 실질적인 무도교육을 위한 개선방안

1. 입법규정상 개선방안

현행 경비업법 제13조에서 경비업자는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입교육과 직무교육을 받게 하도록 규정하여 위임입법화 하고 있으며, 교육의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경비업법시행규칙으로 규정하여 재위임입법화 하고 있다. 민간경비제도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경비원의 경비교육에 대하여 두 번에 걸쳐 하위법령에 위임입법화한 것은 행정법상 책임행정의 원칙에 부합되지 못할 것이며, 최종적으로 경비업법의 입법목적에 또한 부합되지 못하고 헌법상 기본권보호이념에도 위배될 것이다. 경비업법상 경비교육규정내 무도교육은 현재 일반경비원 신입경비교육 중 3시간, 특수경비원 신

24) 신승윤, “무도교육에서의 윤리교육”, 대한무도학회지 제10권 제2호, 대한무도학회, 2008, 47쪽.

임경비교육 중 5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무도수련의 특성상 정신적 작용을 배제한다 할지라도 실질적인 무도능력은 몇 시간의 교육으로 갖추어지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현행 경비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도교육 관련 규정은 실질적인 무도능력이 구비될 수 있도록 단발성 교육이 아닌 최소 약 3개월의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무도 이외의 교육과정과 분리하여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무도교육을 통한 경비원의 무도능력 구비여부에 대한 평가과정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무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비업자에게 이와 관련된 사항을 경비업법에서 강제하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무도교육은 끊임없이 반복된 수련이 전제가 된다. 신입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월 1회씩 경비지도사로 하여금 받게 되는 직무교육내에서도 무도교육은 지속되어야 하나, 현행 경비업법내에서 이와 관련된 규정은 전무하다. 직무교육에서는 단순한 현장에서의 준수사항 및 경비일정에 대한 전달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비소요문제, 인력문제 등의 이유로 인하여 무도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경비원의 직무교육은 일반경비원이 월 4시간, 특수경비원이 월 6시간으로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3조와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우발적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비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시 단발성 교육인 신입경비교육보다 경비원 재직 기간 중 매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직무교육이 경비원에 대한 경비교육으로 실효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직무교육 시간조차 신입경비교육과 마찬가지로 하위법령에 위임입법화 한 것은 이에 대한 입법내용이 민간경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민간경비에 있어 무도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인력경비가 기계경비로 점차 대체되고 있는 추세이나 경비활동의 최종단계는 현장에서 경비원의 대응이다. 따라서 경비원에 있어 무도능력의 구비여부의 중요성은 각 경비업무별로 상이한 것은 아니며, 모든 민간경비원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필수요소인 것이다. 따라서 직무교육에 관한 현 경비업법상 규정은 위임입법형식이 아닌 법률에서 명확한 직무교육에 관한 내용과 함께 무도교육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현행 경비업법에서는 특수경비원 신입교육강사기준을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 규정하여 신입교육강사기준을 하위법령일지라도 명확히 하고 있으나, 일반경비원 신입교육강사기준은 전무하다. 이에 대해서는 경찰청 내 공고사항에 의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하여 무도교육에 있어 전문인력에 의한 실질적인 무도교육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따라서 전문성이 인정되는 전문교육인력으로 하여금 경비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특수경비원 교육의 경우와 동일하게 하위법령에서라도 교육강사기준을 명확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 무도교육 내용상 개선방안

현대사회에 들어와 무도는 과거 외부의 적에 대한 경비활동을 위한 무도가 아닌 자기수련을 통하여 자아를 완성하고 올바른 인격형성을 그 목표로 한다. 이러한 올바른 인격형성이 전제되어야 잘못된 무도능력 작용으로 인한 불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무도는 이러한 정신적 작용은 결여되고 단순한 외형적 신체단련의 형태로 전락하

고 있는 경우를 보여주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올바른 무도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나타내고 있다. 무도교육은 오랜 수련을 통하여 올바른 인격을 완성하게 해주며, 약자를 보호하고 민간경비영역에서는 경비대상의 보호와 경비원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 상당히 중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무도교육은 민간경비교육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인정될 수 있다. 불과 몇 시간에 걸쳐 실시되는 무도교육으로 이러한 본래의 의미와 기능을 달성할 수는 없을 것이다.

현재 경비업법상 경비교육내 윤리 관련 과목이 존재하고 있으나, 상당히 짧은 시간, 그리고 이론전달 방식의 교육으로 경비원의 올바른 윤리의식 함양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지속적인 심신의 단련을 통하여 자연스레 형성되는 올바른 인격 형성을 통한 윤리의식을 위해서 무도교육은 직무교육 내에 반드시 포함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현행 경비업법상 일반경비원과 특수경비원의 신입경비교육은 명확히 구분되어져 있으며, 이에 따라 교육 관련 과목 또한 상당히 상이하다. 그러나 일반경비원의 경우 업무는 시설, 호송, 기계, 신변으로 분류되어 각각의 경비업무마다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교육내용 또한 분리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현행 경비업법상 일반경비원 신입경비교육 과목은 이러한 업무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화되어져 있다. 이 중 신변보호와 호송경비업무는 그 업무의 특성상 다른 업무와 달리 경비원의 무도능력이 상당히 경비업무 수행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경비업법시행령 [별표1]에서 신변보호와 호송경비업에 대한 허가기준으로 무술유단자 5명을 규정하고 있으나, 무도수련의 특성상 지속적인 무도교육을 통한 현장에서의 실무능력을 갖추는 것이 경비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 획일화되어져 있는 일반경비원의 신입경비교육은 각 업무별로 세분화되어져야 하며, 그 중 무도교육 관련 규정은 신입경비교육 과정과 더불어 직무교육 내에서도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무도교육의 실질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관할 경찰청 또는 경찰서에서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따른 입법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무도능력을 이미 갖춘 경비원을 선발하는 경비업체에서는 무도능력에 대한 검증시스템을 거쳐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의 무도능력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이와 관련된 경비업법상 규정은 존재하지 않아 형식적 요건만 구비되면 무술유단자로 경비업체에 채용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한다. 이에 대하여 현행 입법규정은 경비업허가 관련 규정에서 무술유단자의 무도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에 관한 내용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사설경호원 양성학원과 전국의 경호 관련 학과에서도 무도능력을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무도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며, 형식적인 교육에서 탈피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 론

현대사회는 안전에 대한 의식이 과거와 달리 상당히 증대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경찰인력의 2만 명 증대 정책이 시행되고 있어 사회가 요구하는 치안인력을 갖추어 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도 있으나, 여전히 우리나라는 OECD 가입 국가 중 치안을 담당하는 인력이 부족한 국가로 자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 대부분이 공경비에 의한 치안유지활동에 만족하지 못하여 상당수가 민간경비를 이용하고 있

는 것으로 민간경비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현재 민간경비는 경비업법상 5가지로 분류가 되었지만 이러한 모든 경비업무는 모두 경비대상의 안전확보를 최종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경비대상에 대한 안전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민간경비원은 이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 중 올바른 직업의식, 윤리의식과 더불어 무도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경비업법상 경비원의 무도교육과 관련된 규정은 상당히 미비하며, 법령에 규정된 내용 또한 3시간 내지는 5시간에 불과하다. 이것은 곧 경비대상의 안전 확보와 직결될 수 있는 문제로 민간경비교육 내 무도교육은 경비원이 실질적인 무도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화된 교육과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대부분의 권력적 경비활동을 할 수 있는 경찰의 경우에도 민간경비와 대비하여 약 4배에서 20배 이상의 무도교육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사인적 신분에서 지나지 않는 민간경비원에게 있어서 무도교육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경비업법상 모든 민간경비원은 경비대상에 대한 위해 및 위해자를 가장 신속하며 효율적으로 제압하여 경비대상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국민은 안전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민간경비교육 내에 실질적인 무도교육 규정이 입법화되어야 할 것이며 관련 내용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논문 접수 : 2016. 8. 15, 심사 개시 : 2016. 8. 23, 게재 확정 : 2016. 9. 21〉

참 고 문 헌

I. 국내문헌

1. 단행본

박준석, 민간경비론, 백산출판사, 2010.

_____, 한국무예학통론, 백산출판사, 2004.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1.

2. 논문

김용운, “민간경비 자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3.

김종보, “기본권침해 심사기준에 대한 소고 : 과잉금지원칙의 적용영역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제10권 제3호, 한국비교 공법학회, 2009.

김홍규, “국내 특수경비원의 문제점과 그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민왕식·박준석·오세광, “무도수련과 경호원의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14호, 한국민간경비학회, 2009.

박준석·정성숙, “경호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10호, 한국경호경비학회, 2005.

서인덕, “우발상황시 근접경호의 합기도기술 적용 방안”, 용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3.

- 신윤호, “합기도 술기의 경호무도 적용”, 용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신승윤, “무도교육에서의 윤리교육”, 대한무도학회지, 제10권 제2호, 대한무도학회, 2008.
- 송수복, “경비업법 개정을 위한 시론: 직무와 관리권한을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이상철, “경호기법에 입각한 경호무도 지도방법에 관한 고찰”, 용인대학교 무도연구지, 제8권 1호, 용인대학교, 1997.
- 임재성, “민간경비원 교육훈련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오세광·박준석, “경호무도 수련의 도덕교육 발전방안”,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23호, 한국경호경비학회, 2010.

II. 기타

경찰청홈페이지 <http://www.police.go.kr>(2016. 7. 21 검색).

< ABSTRACT >

A Study on the Need for Martial Arts Education as a Part of Education for Private Security Guards under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Lee, Young –Woo · Song, Su –Bok

Security guards should overpower a person who poses any threat of immediate harm using the most rapid and efficient methods. That requires very long periods of martial arts practice and also needs preparedness training for each crisis situation in a consistent, repetitive manner. Yet, despite the widespread understanding of the need for martial arts education, irregularities and ills inherent in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spark negative attitudes towards such training offered as part of education for newly–employed security guards and lead to un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martial arts education offered as part of on–the–job training. This is one of the biggest challenges facing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as it moves forward on the right track.

To address this problem, a law should be passed requiring practical martial arts education in the field of private security which is directly associated with public safety, and a systematic and specialized system of martial arts education should be put in place. Yet, there are virtually no or very few relevant regulations and statutes regarding martial arts education offered as part of private

security education.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presented legal issues and content-related issues in martial arts education currently being provided as part of private security education and made the case for martial arts education rather than offering practical countermeasures.

◆ Key Words : Constitutional Rights, Security Guards, Security Education, Martial Arts, Martial Arts Education, Practice, Private Security, Public Safety, Preparedness Training, Private Security Education